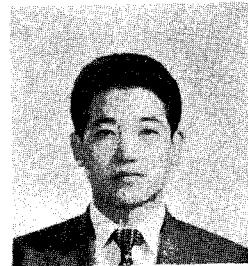


食品添加物의 規格 및 基準改正의 意義

지난 9月10日 保社部令 第380号로 公布된 食品添加物의 規格 및 基準이 改正公布되었다. 食品添加物의 製造, 加工, 使用 및 保存의 方法에 關한 基準과 成分에 關한 規格을 規定한 이 改正法律의 意義는 무었인가?



国立保健研究院 食品第二科
權 佑 昌

1. 序 言

使健社会部令 第380号(1971, 9, 10字)로 食品添加物의 規格 및 基準이 改正公布 되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改正을 거듭하여 왔으나 모두가 部分적인 改正 또는 一部品目的 追加로서 食品衛生法施行規則 別表에 기재되어 있는 化学的合成品의 全品目을 单卷에 수록한 規格基準을 이루하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食品添加物의 規格 및 基準의 運用에 많은 不便을 招來하였다.

食品添加物의 規格 및 基準이라 함은 食品添加物의 製造, 加工, 使用, 및 保存의 方法에 關한 基準과 成分에 關한 規格을 規定한 것으로서 添加物全般에 걸친 法典이다.

食品添加物이라 함은 食品의 製造, 加工, 또는 保存時 食品에 添加, 混合, 浸潤等의 方法에 依하여 使用하는 物質로서 法的 및 一般的으로는 单只添加物이라고 부른다.

이 添加物의 規格 및 基準에 맞지 아니하는 添加物은 製造, 輸入, 加工, 使用 또는 保存할 수 없고 이 規格 및 基準에 適合하게 製造, 加工, 使用 또는 保存되어야 한다.

食品添加物의 大部分은 化学的合成品이고 셀라친, 카라멜, 酵母等과 같은 一部天然物質이 있다. 従來의 規格基準은 化学的合成品에 對해서만 規定하였으나 이번 改正版에는 위의 天然物質에 對해서도 規制하였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改正으로 因하여 이를 利用하는 사람들이 不便을 느껴왔고 또한 食品衛生法施行規則의 改正으로 化学的合成品이 250種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補完도 必要하여 이의 改正作業에着手한 것이 지난 해 11月부터였다. 約半年에 걸친 作業끝에 그 草案을 完成한 것이 今年 6月이었고 7月中에 法制處 審議를 거쳐 9月 10日에 公布하게 이룬 것이다.

이번 改正版의 特色이라고 한다면 化学的合成品

으로 指定되어 있는 250種의 規格 및 基準을 하나의 部令으로 統合한 것이라 하겠다.

食品에 對한 規格 및 基準도 위의 性格과 同一하는 것이 지난 71. 6. 1字 保健社会部令 第376号로 公布되므로써 하나로 統合되었던 것이다.

食品이나 添加物의 規格 및 基準에 있어 公布된 内容의 結果만을 두고 볼 때 그 内容이나 分量으로 보아 그 어려움이 쉽게 짐작되지 아니하나 實際 規格基準의 新規制定이나 改正作業은 매우 어렵고 힘드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下에서 이룩한 規格基準도 보는 사람의 觀點에 따라서는 完全無缺하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規格基準이란 그 性格上萬人이 共感할 수 있는 完全無缺한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食品衛生의 目的을 수행함에 그 思考와 方法에 있어 사람마다 見解를 달리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先進 外國의 規格基準을 보더라도 未治하거나 우리의 觀點 및 見解와 다른 点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国家마다 規格基準이 다르다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는 事實이다.

이번 食品 및 添加物의 各 規格基準의 二大 改正作業에 있어서도 保健社会部 食品衛生担当官室 및 国立保健研究院 衛生部에서 이에 參與한 사람들은 온갖 隘路와 困難을 무릅쓰고 献身의 努力を 傾柱하였던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食品工業의 歷史가 짧아 우리나라 加工食品에 對한 資料와 文獻이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狀況아래서 長期間에 걸친 研究調査를 할 틈도 없이 短時日内에 規格基準을 만들자니 自然 힘들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如何든 이제 規格基準은 우리나라 食品衛生史上 처음으로 基礎를 잡은 셈이니 앞날을 為하여 多幸으로 생각한다.

2. 改正의 歷史

여기서 參考의 으로 그동안 改正되어온 添加物 規

格基準의 内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部令日字 改正內容

第175号	66. 3. 23	新規制定(40品目, 後에 11品目이 削除되어 29品目이 남았다.)
" 190 "	66. 12. 20	파라옥시 安息香酸부칠의 使用基準 改正.
" 204 "	67. 10. 25	소르빈산 및 그 塩類의 使用基準 改正
" 214 "	68. 2. 27	113品目에 對한 規格基準 追加
" 248 "	69. 4. 15	63品目에 對한 規格基準 追加
" 329 "	69. 8. 1	한글化 및 統合(計205品目)
" 337 "	69. 10. 29	名称变更 過망간산칼륨의 使用基準 改正
" 380 "	71. 9. 10	54品目追加, 4品目削除) 計255種)

처음 制定當時의 名称인 “食品添加物의 製造, 加工, 使用에 關한 基準과 그成分의 規格에 關한 規程”을 69. 10. 29 “食品添加物의 規格 및 基準으로 고쳤다.

3. 改正內容

이번에 改正된 主要內容은 54個品目을 追加하고 4個品目을 削除한데 있다.

追加된 54個品目은 새로 指定된 品目을 비롯하여 既히 指定되어 있는 品目에서 結晶体만 수록되어 있던 것을 無水物도 追加하고 其他 L體에 對한 DL體 및 規格이 制定되지 아니한 것 等이다.

또한 “麵類添加 알카리剤”에 對한 制造基準을 新設하고 食品衛生法施行規則에 指定되어 있는 250種의 化学的 合成品以外 化学的 合成品이 아닌 젤라친, 카라멜, 酵母 및 混合製劑와 타일色素(製劑)의 5種을 規格화하였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追加된 54개 品目

5'-구아닐산나트륨
구연산 (무수)
구연산칼슘
글루코노델타락톤
글루콘산철
글루콘산칼슘
베투인지질
5'-리보누크레오타이드 나트륨
5'-리보 누크레오 타이드 칼슘
면류첨가 알카리제
부칠프타릴 부칠글리코레이트
브롬산 칼륨
브롬화유
비타민A 유
분말비타민A
유성 비타민A 지방산에스텔
비타민B₁₂
비타민E
산성아황산 나트륨液
D-소르비톨액
수산화 나트륨 (결정)
수산화 나트륨액
스테아릴젖산 칼슘
아황산 나트륨 (무수)
에리쏘르빈산
에리쏘르빈산 나트륨
이산화 탄소
제1인산 나트륨 (무수)
제2인산 나트륨 (무수)
제3인산 나트륨 (무수)
 $d\ell$ -주석산
 $d\ell$ -주석산 나트륨
 $d\ell$ -주석산 수소 칼륨
초산 나트륨 (무수)
 β -카로친

카아복시메칠 셀루로오스 칼슘
카제인
카제인 나트륨
탄산나트륨 (무수)
파라옥시 안식향산 이소부칠
파라옥시 안식향산 이소프로필
파라옥시 안식향산 세컨드리부칠
폴리부텐
폴리아 크릴산 나트륨
폴리이소 부칠렌
페로인산 나트륨 (무수)
합성팽창제
활성탄
황산 제1철 (건조)
젤라친
카라멜
효모
혼합제제
타알색소 (제제)

(2) 削除된 4개品目

사이클라민 산나트륨
사이클라민산 칼슘
식용색소 녹색 제1호
메칠 나프토 퀴논

(3) 麵類添加 알카리剤의 製造基準

麵類添加 알카리剤란 국수等을 만들 때 固有의 色
 抒과 風味를 부여하기 為하여 添加하는 알카리剤를
 말한다.

前에는 이에 対한 製造基準이 없어 알카리以外
 다른 物質도 썼으나 이번 改正에 다음과 같이 製造
 基準을 規制하였다.

「麵類添加 알카리剤(化学的合成品에 限한다)를 製
 造 또는 加工할 때에는 각각 그 成分規格에 適合
 한 炭酸나트륨, 炭酸칼륨, 炭酸水素나트륨, 磷酸鹽
 의 나트륨 盐 또는 칼륨 盐을 原料로 하여 이 中의 1

種 또는 2種以上을 混合한 것 또는 이들의 水溶液 또는 小麥粉으로 褐色한 것이어야 한다.

이 規程은 公布後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면류첨가알카리剤를 만드는 営業者는 위의 製造基準에 맞도록 措置를 取하여야 할 것이다.

4. 運用上 注意할 点

새로이 改正公布된 添加物의 規格基準의 運用에 있어 몇 가지 注意할 事項을 說明한다.

(1) 총칙에 “이 규격 및 기준에 규정된 試驗方法以外의 方法으로서 그 試驗方法이 보다 더 精密할 때에는 그 方法을 使用할 수 있다. 다만, 그 結果가 疑心스럽거나 判定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规定된 方法에 依하여 試驗하고 判定하여야 한다”라고 规定되어 있다. 이번에 새로이 追加한 事項이다.

이는 公定試驗은 어디까지나 確實하고 統一된 方法에 依하여야 하나 化學實驗 特히 機器分析 等의 發達로 보다 便利하고 精密한 方法이 있을 때는 그 方法에 따라 試驗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例를 들면 “세미미크로킬달法”에 따라 硝素를 定量할 때 그 裝置의寸法이 规定된寸法과 다르더라도 試驗의 目的으로 보아 规定寸法의 것을 썼을 때와 同等 또는 그 以上的 精密度가 있으면 그 裝置에 依하여 試驗을 하여도 무방하며 0.1N水酸化나트륨 용액으로 滴定하도록 规定되어 있을 때 0.05N水酸化칼륨용액을 사용해도 試驗結果에 同等以上の 精密度가 있으면 이것을 使用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规定은 試驗을 實施하는 試驗者가 保有한 機械, 器具, 試藥等의 便宜를 考慮하여 設定한 것이므로 原則의으로는 어디까지나 規格基準에 规定되어 있는 方法이 判定의 基準이 되는 것이다.

即 試驗結果 疑心스러울 때, 나중에 爭點이 될 우려가 있을 때는 规定의 方法에 따라 試驗하고 判定하여야 한다.

(2) 化学的 合成品 (食品衛生法施行規則에 规定된 것) 250種 以外 다음의 5種이 規格化되어 있다.

셀라친

카라멜

酵母

混合製劑

타알色素 (製剤)

이들에 对하여는 각各 그 定義가 設定되어 있으므로 그 定義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事項에 留意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① “酵母”는 乾燥酵母와 生酵母에 对하여 规定하였는 데 이 规定은 一物質로서의 酵母에 对하여 规定한 것이므로 酵母를 成分의 하나로 하여 其他 다른 化学的 合成品이나 다른 物質을 混合한 製剤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混合製剤”는 定義에 规定한 바와같이 添加物을 二種以上 混合하거나 一種 또는 二種以上 混合한 것을 부형제와 다시 混合 또는 褐色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混合製剤에 属하는 것일지라도 따로 规格이 定하여진 것 例를 들면 “合成膨脹剤”나 “麵類添加알카리제” 같은 것은 例外한다.

混合製剤의 規格은 素와 重金属뿐이니 이는 混合製剤의 種類가 많고 그 狀態가 雜多하므로 不得已한 일이며, 다만 이 程度의 規制나마 하므로써 混合製剤에 对한 管理를 하자는 데 目的이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 研究調査를 하므로써 점차 補完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타알色素(製剤)”는 타알色素의 單一物質이 아닌 二種以上의 混合製品 및 褐色제품을 말한다.

타알色素는 製品核查對象品目으로서 国家核定을 畢한 後 合格証紙를 添付하여야만 販売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檢查業務를 더욱 明確히 하기 为하여 制定하였다고 볼 수 있다.

끝